

■ 목 차

■ 칼럼 ■

-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분쟁 2

■ 화제의 판결 ■

-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5

■ 화제의 뉴스 ■

- 1. 권익위, “NH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 행정심판..... 9
- 2. 턴키 비리부정 적발되면 사실상 영업 어려워져..... 10
- 3.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실시간 감시..... 11

■ 최신 법령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

■ 최신 판례 ■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14

■ 칼럼 ■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분쟁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

계약이행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빈발하면서 보증금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안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지연 및 거부행위로 인해 회원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기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대립입니다. 계약이행보증은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수급인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얼마로 볼 지에 관해 다툼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한도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전액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계약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귀속 조항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금 약정을 한 목적은 수급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것 외에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관계를 청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최소한의 손해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예정하여 도급인으로 하여금 손해발생 및 그 수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 없이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하

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약관 상 보증금 청구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들어 실손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증금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많습니다.

도급인(원수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귀속 조항을 포함시켜야만 보증금 청구가 용이해지므로 가능한 해당 조항을 넣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하도급표준계약서는 실손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계약을 사용할 때는 보증금귀속 조항을 특약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증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도 다툼이 많습니다. 계약이행보증의 보증사고는 “보증기간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하수급인이 부도날 경우 하도급인은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합의해제 방식으로 기성고를 확정해 타절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합의해제의 경우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도 “합의해제의 경우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합의해제 사안에서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힘들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해제 방식 대신 해제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보증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에 의하면 보증기간 내에 계약해제를 해야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만료일에 계약해제·해지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3조 제4항). 보증기간 만료일 전 날 계약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하루 만에 계약해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 차이인데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보름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 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보증금 청구 요건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화제의 판결 ■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쟁점

위 판결에서는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함으로써 위 판시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대법원은 제3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종전 소송의 재파기환송 후 그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채무자에게 반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인 원고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그러나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ii)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합

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서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i)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ii)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iii)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하여 형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채권 가압류 법리와도 일맥 상통합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이번 대법원의 판시는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기존의 판례와 비교하여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더 부합하고,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전원합의체 판결](#)

■ 화제의 뉴스 ■

1. 권익위, "LH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 행정심판

사전 분양 당시 세부항목별로 분양가격이 공개됐다면 준공 당시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LH는 수분양자의 건축원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기업인 LH는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가 있고, 해당 아파트의 건축원가가 분양팜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 ["LH아파트 건축비, 분양주민에게 공개해야" - YTN | 2012. 6. 22.](#)
- [권익위 "LH 건축비 공개하라"...행정심판 결정 - 매일경제 | 2012. 6. 22.](#)

■ 화제의 뉴스 ■

2. 턴키 비리부정 적발되면 사실상 영업 어려워져

턴키입찰에서 심의와 관련해 건설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부정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면 적발일로부터 2년간 턴키심의에서 10점씩 감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 2012년 7월 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원인행위부터 적용되어, 소급적용은 배제되었습니다. 업체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운영규정 별표 12).

[관련 링크]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2. 7. 5.\] \[국토해양부훈령 제844호, 2012. 7. 5., 일부개정\]](#)
- [턴키비리·부정 적발되면 턴키영업 접어야 - 건설경제신문 | 2012. 7. 10.](#)

■ 화제의 뉴스 ■

3.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실시간 감시

서울시는 노무비와 장비·자재 대금지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와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되어 대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의 불연속성', '임시·일용 근로자' 등 건설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원·하도급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 연합뉴스 | 2012. 7. 3.](#)
-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서울시가 막는다 - 조선일보 | 2012. 7. 3.](#)

■ 최신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1467호, 2012. 6. 1. 일부개정, 시행 2012. 6. 1.]

1. 개정 이유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분양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사용승인 전에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분양'에서 제외(제2조 제2호 단서 신설)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되는 '분양'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이 법 적용 제외(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전매 또는 알선 금지(제6조의3 제3항 신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위 나.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3. 다운로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최신 판례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1.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령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판시사항의 요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이하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 경과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개개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살펴보지 않았다면 지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단논거

먼저 대법원은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를 건물의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두9270 판결).

다음으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조가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충의견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진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단독주택도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적합성, 설비노후도와 같은 여러 요인을 심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¹,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조사한 후에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도 주택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안정성, 주거환경 적합성 및 보존 상태 등에 비추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기준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무분

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의 균형도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보충의견은 “원고들과 같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아무런 객관적인 조사 없이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은 도시정비법령상 안전진단이라는 통제절차를 거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단독주택은 그러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의견은 이번 사건과 같이 수권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한 후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의 규율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했을 때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수권규정과 하위법령이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규율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권규정이 하위법령에 일정한 요건에 관한 규율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보고 그 규율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한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이기만 하면 그로써 곧 상위의 수권규정에서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¹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7호)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조사 등으로 판단한다”는 등의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